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00** 제출연월일: 2009. 6.

제 출 자:중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법」개정(2009.2.12, 법률 제9468호)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투표연령을 조정하고, 주민 등록번호나 주소 이외의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안 제3조): 20세 ⇒ 19세
- 나.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 위 내용을 별기 계1호서식 ~ 별기 계7호서식 중 작성요령에 반 영

- 3. 근거법규: 「주민투표법」제5조제1항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9. 5. 25 ~ 6. 1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을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중 "20세"을 "19세"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각각 한다.

제4조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관한 금지대상은 제외한다."를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의"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내거 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거소·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성명, 주소·거소·체류지, 주민등록번호·국내 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각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7인"을 "7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같은 조 제10항 중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을 "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으로,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 2항에 따라"로 각각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온 제6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각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충	; 구	인	대 포	E 자	증	명	서	교 -	부	신 청	서	
청 구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u>.</u>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사항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 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 의 성명을 기재
-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 재

【 별지 제3호서식 】

	서 명	영요 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경투한대표사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수임자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 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 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 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5호서식 】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조례 제15조제4항관련)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 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

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또는날 인	서명일자	비고

-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 의 성명을 기재한다.
-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4. 주소란에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 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

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주	<u>민</u>	투	丑	청	구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
청구 이유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관련자료
- ※ 작성요령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0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등	록 번 호	
신 경 현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구조문 대비표

#12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이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의 건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조(책무) ①(생략) ②구청장은 울산광역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생략) #1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1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제7조제1항에 따라호와 같다. 1. (생략)

현 행	개 정 안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u>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 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u>법 제9조제2항에 따라</u>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u>법 제10조제3항에 따</u> 라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이를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	
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u>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서명요 청기간은 <u>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청구인대표자증명 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생략) 1. ~ 3.(생략)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생략)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3.(생략)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 ⑨(생략)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현행과 같음) ③
제13조(처리기간) ①(생략)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현행과 같음) ②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시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u>당해</u>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u>당해</u>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 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해당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40 (제122회-본회의제2차부록)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 대표자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 대 표 자		
<u> </u>	[구 조 (선화먼오 :		
청구의 대상 및	청구의		
취지	취지		
청구 이유	청구 이유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년 월 일	는 된 :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u>※ 작성요령</u>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을 기재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크) <u>세</u>	الم الم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2.	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주 민 투 표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 구 요 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사항	 * 제외사항 서명요청기간 이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 제외지역 :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지역 :	의 사람은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은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이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	년 월 일		
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년 월 일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혂 행 개정안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민투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요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대표자 청구인대표자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일부터 기간 년 월 일까지 수임자 기 간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수임자 주민등록번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주 소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 일부터 기간 녆 월 년 월 일까지 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월 일 녆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 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増지	제5ㅎ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했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조례 제15조제4항관련)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서명또는날 인	서명일 자	비 고

※ 작성요령

-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개 정 안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조례 제15조제4항관련)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찰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u><삭 제></u>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 합니다. 년월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관련자료 참 고: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첨부서류: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00)

1. 의 안 명: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6. 25 (목)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7. 2 (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09. 7. 9 (목)

3.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 가. 2009. 2. 12자로 「주민투표법」(법률 제9468호)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투표연령을 조정하고,
- 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외의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안 제3조): 20세 ⇒ 19세
- 나.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 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 ※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중 작성요령에 반영

5. 관렵법규

가. 주민투표법」제5조제1항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성춘)

O 본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 643사건)에 따라

- O 2009. 2. 12자로 주민투표법(법률 제9468호)이 개정되어
 -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 O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